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. 4. 7 선고 2017가단116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7. 4. 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1. 4. 28. 접수 제296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박미선

별지